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258 / 전송 731-6956
 처리부서 : 세무행정과(시청본관3층) 담당 임성순

문서번호 세정 13430- 4

시행일자 1998.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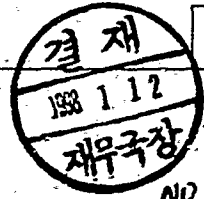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국	장	전	결
과	장	위임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평가계장		임성순	심사계장
기안	임성순		협조



제목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1. 내무부세정13430-591('97.12.23)호 및 시장방침제22('98.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50%로 한다.

나. 시 행 일

○ 1998년 1월 20일부터

첨부 1) 고시문(안) 1부.

2) 취득·등록세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1부.

3)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의뢰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의 2 제3항에 의거 토지에 대한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첨부 고시문과 같이 시보에 고시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세무행정과장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무관리과장, 부과(1)과장

제목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통보

1. 내무부 세정13430-591(97.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하니 '98. 1. 20 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가.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50%

나. 세정13430-397(97. 7. 1)호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취득세의 적용비율은 '98.1.19까지 적용

다.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에 통보

첨부 취득·등록세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구 1~25, 세무운영과장, 전산정보관리소장

(제 4 안)

수신 내무부장관

참조 세정과장

제목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결과 보고

1. 내무부세정13430-591('97.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별첨 고시문과 같이 결정·고시 하였고 결과보고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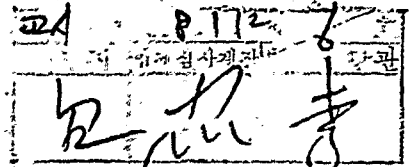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고 시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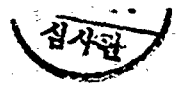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
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5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